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운송사업자 면허 상속 신고기간 연장 조례 위임 >
■ 이연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928호)

2025. 8.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임 종 수

목 차

□ 이연회의원 대표발의(제2207928호)	1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3
1. 운송사업자 면허 상속 신고기간 연장 조례 위임(안 제15조제1항 단서 신설 등)	3
※ 참고자료	10

□ 이연회의원 대표발의(2207928)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연회의원 등 16인
2. 제 안 일 : 2025. 2. 6.
3. 회 부 일 : 2025. 2. 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7항에서는 상속인이 결격사유가 있어 사업면허가 취소될 상황에 처한 경우 90일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때까지는 결격사유에도 불구하고 사업면허 취소를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상속인이 상속 요건인 교통안전교육의 수요 초과로 교육을 90일 이내에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상속인이 결격사유가 있어 다른 사람에게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하려는 경우에 해당 지역에 양수 수요가 없어 90일 이내에 면허를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90일의 기간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상속 신고 기간을 관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각 지방 실정에 부합하게 개인택시 면허의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및 제7항).

Ⅲ. 검토의견

1. 운송사업자 면허 상속 신고기간 연장 조례 위임(안 제15조제1항 단서 신설 등)

가. 검토의견

개정안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사망에 따른 상속 신고와 관련하여 피상속인 사망일부터 90일 이내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신고기간 규정에 단서를 신설하여, 사업구역별로 사업면허의 수요·공급 등을 고려하여 신고 기간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속받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기간을 상속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단서 신설 및 같은 조 제7항).

현행	개정안
제15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 ①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하려 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 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u><단서 신설></u>	제15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 ① ----- ----- ----- ----- -----, 다만, <u>사업구역별로 사업면허의 수요·공 급 등을 고려하여 신고 기간을 6개 월 이내의 범위에서 관할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u>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⑦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다만, <u>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u>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은 상속인에 대한 면허나 등록으로 본다.	⑦ ----- ----- -----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 ----- ----- ----- ----- ----- -----.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법령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90일 이내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요건을 갖추어 상속 신고를 하고 그 사업을 직접 승계하거나, 90일 이내에 상속 신고 및 양도·양수의 인가를 받아 그 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음¹⁾²⁾.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 ①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다만,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은 상속인에 대한 면허나 등록으로 본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 ③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양도·양수의 인가를 받아 그 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상속인 본인이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법 제15조

또한, 법정 상속 신고기간(90일) 이내에 상속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³⁾, 법정 상속 신고기간(90일)이 지난 후까지 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아니하면 면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면허취소 대상이 됨⁴⁾. (참고1. 참조)

그런데, 상속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직접 승계하려는 경우 상속인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그 사업을 직접 승계할 수 있다.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로 세분)과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일반택시, 개인택시로 세분)로 구분되는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상속은 법인사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실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에 관한 법규의 적용대상은 대부분 개인택시운송사업자임.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5조제1항(제35조와 제4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속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사업면허취소·사업허가취소·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별표 3)

2. 개별기준

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플랫폼운송사업 및 플랫폼중개사업

위반내용	근거 법조문	처분내용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7. 법 제5조, 제29조, 제49조의3 또는 제49조의18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플랫폼운송사업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의 <u>면허기준</u> , 등록기준 또는 허가기준을 <u>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u> . 다만,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85조제1항제7호	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사업허가취소		
나. 법 제5조 또는 제29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면허기준이나 등록기준 및 법 제49조의3에 따른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기준 중 운수종사자를 위한 휴게실 등 부대시설 기준(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플랫폼운송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제외한 <u>면허기준</u> 이나 등록기준 또는 허가기준을 <u>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u>				

이 면허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용 운수종사경력 요건(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1호)을 충족하지 않으면 대체요건으로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개인택시면허 양수교육(시행규칙 제19조제9항제2호)을 이수해야 하는데⁵⁾, 2024년 1년간 양수교육 이수 인원이 8천명을 넘고 있고,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 ① 제18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설등의 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6년 동안 국내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화물자동차”라 한다)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건설기계”라 한다)로서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나.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11년 동안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 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다. 국내에서 가목에 따른 운전경력과 나목에 따른 운전경력이 있는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자가용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및 자가용 건설기계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그 기간을 2분의 1로 환산하여 합산한다)이 있고, 합산한 무사고 운전경력의 최초 운전종사일부터 면허신청 공고일까지의 기간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⁹⁾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관할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요건을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하 생략)

⑥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면허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

1.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 2년 이내의 해당지역 거주기간

2. 면허발급요건 또는 우선순위

3. 그 밖에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양도·양수의 인가를 받아 그 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상속인 본인이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그 사업을 **직접 승계할 수 있다.**

⑧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하려는 자는 양도·양수 인가신청일 현재 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⑨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관할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요건을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양도·양수 인가신청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5년 이상 국내에서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일 것. 다만, 외국에 거주한 기간이 있을 경우 출국 전의 운전기간과 귀국 후의 운전기간을 연결하여 합산하되, 귀국 후의 무사고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2.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이

분기별(3개월 단위) 추첨제로 교육생을 모집하는 체계에서 매분기 경쟁률이 평균 3대 1을 넘고 있어⁶⁾ 법정 상속 신고기간(90일)을 준수하기 어려운 실정임.(참고2. 참조)

또한, 상속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도 상속인 간의 상속순위 결정, 지역 내 개인택시면허 양수 수요 부족 등의 이유로 법정 상속 신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⁷⁾.

한편, 2024년 12월 기준 개인택시 운수종사자 총 165,081명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88,616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개인택시의 상속 신고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교통안전체험, 교통사고 대응요령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교육(이하 “교통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할 것

6) 개인택시면허 양수교육(한국교통안전공단 실시) 신청 현황

구 분		모집정원	신청인원	경쟁률	비고
2024년	4분기(10~12월)	2,016	7,114	3.5대 1	평균 경쟁률 3.1대 1
2025년	1분기(1~3월)	2,752	7,149	2.6대 1	
	2분기(4~6월)	2,624	8,088	3.1대 1	

* 2024년 4분기부터 전면추첨제 실시, 그 전에는 선착순 운영
(자료: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7) 개인택시연합회에 따르면, 개인택시면허 상속 신고기간을 미준수하는 주요 사유는 상속자의 관련규정 미인지, 지역 내 개인택시 양수 수요 부족, 개인택시 상속순위 미결정, 상속인 부존재 등임.

【 개인택시 운수종사자 연령별 현황 ('24.12월 기준) 】

(단위: 명)

구분	전체	40대 이하	50대	60~64	65~69	70~74	75~79	80대 이상
개인택시	165,081 (100%)	8,406 (5.1%)	30,638 (18.6%)	37,421 (22.7%)	46,607 (28.2%)	30,100 (18.2%)	10,189 (6.2%)	1,720 (1.0%)

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 국토교통부)

종합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사망 시 면허 상속 요건을 갖추기 위한 교육이수에 상당기간이 소요되고, 면허를 상속받지 않고 양도하려는 경우에도 양수 수요 부족 등으로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현실과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절반 이상이 고령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지역별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수·연령, 개인택시 면허 수요 등 여건에 따라 상속기간을 법정 상속·양도기간(90일)보다 긴 최대 6개월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는 것은 상속인의 권익 보호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됨.

한편,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상속 신고기간을 현행 90일로 하되, 9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대표발의, 제2207711호)이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계류 중이므로 개정안과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참고3. 참조)

다. 국토교통부 의견

상속신고 기간을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최대 180일(6개월)까지로 하여 지방 실정에 맞게 면허의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동의함.

문 의 처
02)6788-5584

참고 1**개인택시 상속 신고기간 도과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

- 최근 5년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4조제1항제2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상속 신고기간 미준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 현황

연도	시도	부과건수	부과금액	납부건수	납부금액
2019년	서울	4	12,500,000	4	12,500,000
2021년	서울	4	13,000,000	4	13,000,000
2022년	경기	1	2,500,000	1	2,500,000
	경남	1	2,500,000	1	2,500,000
2023년	서울	1	2,500,000	1	2,500,000
	인천	2	5,000,000	2	5,000,000
	경기	1	2,500,000	1	2,500,000

출처: 전국 지자체 취합자료(2024.9)

(자료: 국토교통부)

참고 2

개인택시면허 양수교육 신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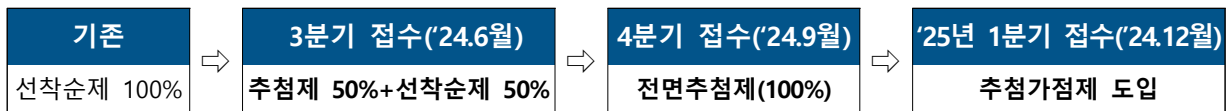
○ 모집 정원 대비 교육 신청 현황('24.1월~'25.6월)

구분	모집정원	신청현황	교육이수	모집 방식	비고
'24년	1~3월	2,240명	7,042명	선착순	3개월 단위
	4~6월	2,016명	6,000명	선착순	3개월 단위
	7~9월	1,856명	6,569명	추첨+선착순	3개월 단위
	10~12월	2,016명	7,114명	전면추첨제	3개월 단위
	12월 추가모집	96명	507명	(추첨가점제 시행)	추가모집
	계	8,224명	27,232명	-	-
'25년	1~3월	2,752명	7,149명	전면추첨제	3개월 단위
	4~6월	2,624명	8,088명	전면추첨제	3개월 단위
	계	5,376명	15,237명	-	-

* '24년 상반기 교육접수는 '선착순'으로 운영되어 접수기간 내 '접속자(명)'으로 집계함

** '24.4월 교육희망자 약 9,000명 대상 설문조사 실시, '80% 이상 기존 접수방식 개선 희망'

< 교육접수 방식 개선 개편 과정 >



* 추첨가점제 : '25년1분기 교육과정부터 '낙첨' 횟수에 비례하여 가점을 부여, 약 1년 이내 당첨 확률 90% 이상 예상(1년간 한시적 시행)

(자료 : 한국교통안전공단)

